

설계자와 시방서(2)

Architect & Specifications

이중호 / 자유기고가, FED 품질관리 담당
by Lee Chung-Ho

우리가 해외공사에서 크레임이 발생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는 시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도면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관행은 어려운 시방서를 해독하기 보다는 간편한 도면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경우 시방서가 도면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는 재시공이나 공사비의 지불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설계자와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기술자가 공동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제공한 설계자에게는 문책이 없고 이를 감지하지 못한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선진국의 관행이다.

어쨌든 시방서가 도면마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설계자나 시공자는 절대 잊어서는 안되지만 상충된 시방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공자에게만 지우는 규정은 개방된 건설시장에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방서를건축의 해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이는 또 시방서의 제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현장의 기술자를 전쟁터의 병사와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전장의 병사는 소총과 탄약이 기본화기 이듯이 현장의 기술자에게는 도면과 시방서가 기본화기이다.

소총만 있고 탄약이 없는 병사나 도면만 있고 시방서가 없는 현장기사, 이는 敗戰과 부실의 처음이요 끝이다.

시방서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했던 우리의 현장은 제도적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도 부실을 추방하고 품질을 도출할 수 있는 시방서, 세계시장에서도 손색이 없는 품질과 자존심이 함께하는 시방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길이고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하고 훌륭한 시방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완벽한 시방서는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공정한 계약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만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국제수준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발과 보완 수정작업이 있어야 한다.

시방서의 구성부터 알아보자.

엄밀히 말해서 시방서의 구성은 해당공사의 특성이나 기능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효과적인 구성의 공통분모가 오늘날 거의 모든 시방서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규정(총칙)과 기술규정이며, 기술규정은 다시 특별규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규정은 계약이 핵심

이고 전 규정(Division, Requirement)을 규제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우리 시방서는 일반규정이 거의없는 상태인데 이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미국의 CSI의 서식은 기계와 전기, 가구, 운반장비 등 16개의 장(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건축만 2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성이나 기능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구성의 단위가 적당히 중감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단위는 혼돈과 복잡으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각개의 장(Division)은 Section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시방서의 가장 요체이며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Section은 Part로 구성되고 크게 나누어 자재나 장비의 품질을 제한하고 시공의 방법을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세분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참조문헌이나 공통사항, 주자재와 부자재(Accessories), 주자재 시공과 부자재 시공 그리고 품질관리와 시험(Test)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참조규정이나 문현은 우리의 경우 K.S정도이지만 선진국의 그것은 굉장히 많아서 시방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고통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세분된 전문규정이 품질향상의 모체가 되고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Division이나 Section의 구성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계약이나 품질의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시방서의 구성순서를 시공순서와 같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본공사 시작전에 기반정리를 하고 그 후에 골조, 마감의 순으로 공사가 진행되듯 시방서도 이같은 공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마치 “착공과 준공”을 “준공과 착공”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때 단지내의 각종 시설공사는 본공사의 선행공종이며 공사의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미국의 시방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단지의 조성, 진입로의 개설, 각종 배관, 지하구조물, 포장, 조경 등을 규제하는 소위 “Site Work”的 Division을 들 수 있다.

요즈음 아파트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관이나 구조물의 하자, 조경이나 편의시설의 높은 관심은 이러한 장의 구성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변천이다.

시방서에서 구분되는 가장 큰 공종이 “Division”(장)이고 장을 구성하는 단위가 “Section”이라고 이미 기술했지만 미국의 단위순서는 “Part”,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로 계속된다.

이러한 단위(Unit)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쪽(Page)의

구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페이지의 구성 역시 어떤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면 더욱 편리하다.

예를들어 책을 묶는 쪽(Binding Edge)은 왼쪽이고 Section의 시작은 오른쪽 페이지(Right Hand)에서 시작해야 된다.

또 시방서의 본문(Text)에서 어떤 단위의 시작은 페이지 맨 아래줄에서 시작하거나 본문의 끝줄이 다음 페이지의 첫줄에서 끝나는 문장의 구성은 피해야 된다.

전자를 고아(Orphan)라고 부르며 후자를 미망인(Widow)이라고 부른다.

이야기를 바꿔보자.

시방서의 작성순서는 공사의 순서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대부분의 시방서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방서의 기술규정은 단지내 시설공사(Site Work)가 서두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시방서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지내 시설공사에는 하수도 배관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호에서 하수도의 실명제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기술한 바 있지만, 그 허실을 알아보자.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하수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가스관, 송유관, 난방, 동력, 통신, 산업폐기물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배관은 지금까지 무수한 사고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하수관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실명제가 보도된 바 있다.

하수도공사에 실명제를 적용하면 하수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하늘이 감탄할 정도이다.

생활하수(Sewer Line)는 크게 정화시설, 배관(Pipe), 그리고 맨홀(Manhole)로 구별된다. 옥내에서 정화시설 까지는 누수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관과 맨홀에 대한 문제점만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 배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파이프와 연결제의 종류와 품질
- 파이프의 설치방법과 순서
- 기존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
- 기존 배관의 확인방법
- 배관의 적당한 구배와 유속
- 배관을 지지하는 자재와 전압
- 파이프하부에 살포하는 모래의 두께
- 굴토지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
- 굴토면의 안전
- 뒷채움흙의 종류와 전압 및 시험
- 자재의 현장보관 및 취급방법

- 강제배수의 배관방법
- 둘째, 멘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자.
- 멘홀의 적당한 간격
- 멘홀을 설치해야 할 위치
- 유속이 빠를때(구배가 클때) 파이프와 멘홀의 연결 방법
- 멘홀과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시험의 종류와 방법 복합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 공사후의 준공도 작성과 관리방법
- 배관의 영구적인 표시방법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수관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이지 실명제가 누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참고로 하수관의 설치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4B라 한다.

1. 굴토시 안전(Bracing)
2. 파이프의 지지(Bedding)
3. 파이프의 연결(Bell hole)
4. 뒷채움 흙(Back fill)

하수관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중력(Gravity)에 의한 자연배수이지만 현장의 여건상 강제배수(Force main)를 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배관의 연결, 고정, 시험방법이 자연배수상태의 그것과 상이하다.

멘홀은 배수관의 검사와 관리를 위해서 설치되며 멘홀과 멘홀사이의 배관은 절대 직선이어야 하고 배관의 지지 역시 절대로 집중하중을 받으면 안된다.

하수관의 누수시험은 제품의 종류, 연결의 수(Joint), 그리고 파이프의 지름에 따라서 누수의 허용치가 결정된다.

하수관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준공도를 작성해서 다음의 공사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현장에서 땅파는 작업을 할 때마다 지하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의 주범은 바로 준공도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을 지뢰밭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스관의 폭발이 아니라 가스를 비롯한 여타 배관들이 어디에 묻혀있고 얼마나 깊이 묻혀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공도는 설계도와 관계없이 실지로 시공된 사항을 정확히 원도를 수정해서 작성하면 되고 이런 일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간단한 작업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하수도법이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시방서에 적용하면 된다. 우리의 공사시방서에는 대부분 준공도의 작성을 지시하고 있지만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설계도에 버금가는 준공도의 작성은 우리 시방서에 명확히 규정해서 적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발생되는 지하

배관의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서울에서 하수관을 관통하는 상수관이나 가스관이 상당히 많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배관방법이 무지의 소치라면 세계 최하위의 문명국이고 적당주의의 발로라면 세계 최하위의 무양심국가이다. 하수관을 관통하는 여타 파이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하수관의 트렌치(Trench)에 상수관을 매설해서는 안되고 상수관과 하수관이 교차할때 하수관을 상수관의 위쪽에 배관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상세한 배관방법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누수를 막는 방법이지 실명제는 결코 아니다.

다시 시방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시방서는 누가 만드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발주자가 만든다”는 대답이다. 시방서의 다른 표현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자재나 시공의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서이다. 이는 도면도 마찬가지이다. 도면과 시방서는 설계자가 작성하지만 이는 발주자나 건축주를 대리해서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설계자 혼자만으로 시방서의 작성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전문분야 기술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재와 시공의 결합이다. 즉 자재나 장비의 제조업자와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들의 참여없는 시방서는 의미가 없다.

그 밖에도 일반규정에서 계약당사자만의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가,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우리 말이나 문학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 중의 하나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와 전문시공업자의 참여없이 시방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시방서는 탁상공론이나 이론이 아니다.

지난날 우리가 중동에서 경험한 시방서가 얼마나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시방서이지만 그렇게되기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품질을 보증하는 각종 전문기술의 활용이며 이 전문기술은 거의가 자재의 제조업자나 전문기술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둘째는 시방서가 이론이 아닌 현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셋째는 끊임없이 개발, 보완, 수정작업을 계속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시방서 본문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의 작성은 특별하기보다는 상식적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복잡하고 중복되서도 안된다.

특히 잘못되거나, 애매하거나, 빠진것이 있으면 안되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쉽고 간단한 길이 열마든지 있는데 어렵고 복잡한 길을 택한 우리시방서가 기술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소치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시방서가 가급적 피해야 할 문구가 있다.

즉 논문이나 산출근거, 학설이나 이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시방서의 구성이나 내용은 표준시방서나 공사시방서가 큰 차이는 없지만 공사시방서는 해당 공사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상세한 제한이므로 품질시공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품질시공과 분쟁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방서의 각 단위가 건설의 정보나 자료에 근접하는 수단이라면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구성은 본문(Test)이다. 본문의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정은 강제규정(Mandatory)이다. 그래서 서술적인 “~이다” 혹은 “~으로 한다”는 구술이 아니고 “~해야한다(Shall)” 혹은 “~해서는 안된다”나 “~할 수 없다(Shall not)”는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음은 허용규정(May)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기포제(AE)는 외부에 면한 콘크리트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Shall) 내부의 콘크리트는 기포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May)”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용규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법이다.

어느 규정이나 예외규정(Exceptional)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시공자는 계약공기를 지연했을때 상응하는 자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전쟁이나 전염병, 항만봉쇄, 파업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예외규정이다.

예외규정과 비슷한 배타적 규정(Exclusive)을 알아보자.

예외규정은 전술한 바 처럼 몇가지의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배타적 규정은 특정한 것(Only)에만 국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자.

“레미콘에 가수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동서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때 미국의 정부규정은 “레미콘 제조회사의 서면지시가 있을때만 가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민간 건설회사에 많이 사용되는 FIDIC의 계약서식에는 “Engineer의

허가가 있을때는 가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정한 한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계약서식에서 Engineer는 발주자를 칭하며 우리의 감독이나 감리에 해당되는 말이다.

선진국의 시방서는 시공자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재량을 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선택규정(Optional)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골프장이나 아파트단지에 잔디를 조성할 때 그 방법을 시공자의 선택규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잔디는 때(Sod)를 심는 방법과 씨앗(Seed)을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때 시방서에 어느 한가지 방법이 지정되었을 때는 물론 계약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냥 잔디(Turf)를 조성하라는 계약조건이라면 “때”와 “씨앗”的 방법중 시공자는 임으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밖에도 시방서에 시공자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 구성에 다른 몇가지 규정이 있지만 심도있는 사항이어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본문적성시 범할 수 있는 오류나 분쟁의 소지를 두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시방서는 품질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는 절대적이지만 꼭 상호나 상표가 필요할 때에는 품질도 규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둘째, 시방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는 물론 작성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애매하게 작성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그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즉, 애매한 작성이 분쟁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에 책임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이 국제화의 규정이다.

이제 우리 시방서의 문제점과 시정할 점, 시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미있는 자료 한가지를 소개한다.

작년에 필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기사 약 300명에게 시방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새로 제정해서 발간한 표준시방서를 구입한 사람이 4%미만이고 대부분(81%)의 건축기사는 새로운 시방서가 발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쟁터의 군인이 탄약없는 소총으로 전쟁을 한다면 이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와 책임은 시방서를 활용하지 않은 건축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없는 시방서를 만든 사람과 제도와 관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소개한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국내대학을 평가 발표한 바 있

다. 그 중에서 건축과를 평가한 “한국건축교육의 문제”의 몇군데를 소개한다.

“건축교육이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과 거리가 먼 꿈만 꾸게 했을 뿐 균형잡힌 건축기술인을 길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도 교육이 실무와 연결되지 않아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한채 찔찔매기 십상이다” “설계 따로 구조 따로 시공 따로식의 현장성의 결여” “원로교수들에 의해 대학교육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건축 교수들의 뼈아픈 자성” 등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첫째, 균형잡힌 교육,

둘째, 현장성이 녹아있는 교육

셋째,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들을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공감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결방법을 몰라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필자는 여기서 한가지 결과를 도출하는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방서의 전통성, 실명제의 기반성 그리고 교육의 허구성이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사시방서의 작성이나 사용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공사당사자 즉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서류로서의 역할이다.

계약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태여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시방서가 계약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시방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의 불평등이다. 다시말해서 일방적인 계약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는 휴지화되고 공사는 발주자 멋대로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발주자라 함은 정부나 정부기관을 뜻한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시방서에 “시공자는 담당원의…”라는 구절이 자주 나온다. 이는 계약의 시공자는 당사자이고 발주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자를 뜻하는 내용으로 계약에는 있을 수 없는 불균형이다. 이같은 문장은 마땅히 “시공자는 발주자~”로 바꿔어야 한다.

다음은 일반규정이나 기술규정 공히 감독의 멋대로 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인데 일방의 의사대로 한다면 그런 계약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같은 계약내용은 국제시장에서도 물론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계약이 존속된다면 우리건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규정이 우리시방서에 아직도 존재하는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이요 군국주의의 잔해라

고 필자는 확신한다.

일제말기가 우리시방서의 태동기이고 우리의 제도나 기술의 도입이 초기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진 시방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약자에게 수탈과 만행을 아끼지 않았던 군국주의의 만행은 힘있는 정부가 힘없는 건설업자의 상전으로 군림하면서 발주자 위주의 전통과 관행으로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래서 계약마저 대리자를 보내서 시공자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했고 감독은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관행이 우리건설에 끼친 피해와 악영향 그리고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규정, 관행의 척결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해야 한다.

이 아픔의 첫걸음이 시방서이며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규정, 관행의 시정과 국제화는 시방서의 제정과 활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동서양의 감독을 비교한 글이 있다. 동양의 감독은 시공자와 수직적이고 서양의 감독은 수평적이다. 즉 동양에서는 감독이 시공자의 상전이라는 뜻이다.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는 계약에 의한 평등한 관계이자 위아래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위아래가 있다면 그것은 많이 아는 자, 업무에 충실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의 건설법에도 시공자와 발주자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방서의 균형있는 개정은 하자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시대적인 감각이나 현장적응에 부응했다면 우리의 건설은 보다 신뢰받을 수 있고 건물이나 교량이 붕괴되는 국제적인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건설의 부실이 그 뿌리가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지당한 의견이다.

지금도 일제말기 향수어린 신사참배의 노래를 부르는 교육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제는 편히 쉬는 길이 보은 하는 길이다.

실명제 같은 기반성의 제도보다는 경륜있는 실무자가 실질적이고 현장성있는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시방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 군국주의의 잔해가 도도히 흐르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불평등한 제도이며 그 관행의 제도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월권이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화 시대의 수십년 전의 훌려간 노래를 부르는 교육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건설은 확실히 망한다.

우리시방서의 두번째 문제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계약 쌍방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